

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

지정 취소 대상	법인명	대표자 성명
	주소 (전화번호:)	
지정 취소 사유		

「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」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

직인